#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91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 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로 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있다.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 평 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등) 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 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 ----- <u>업소에</u> 대하여 제 <u>훈련 수료 여부</u>를 연 1회 이상 조사 · 평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 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 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 로 여부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② · ③ (현행과 같음)